

신용정보활용체제

□ 대상 : 신용정보활용체제 / <sci.co.kr>

현행	개정(안)	비고
◆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종류	◆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종류	
1~6. (생략)	1~6. (현행과 같음)	
<신설>	<p>7.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및 철회 신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자에게 전송요구 또는 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- 다만,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 및 중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겠습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용정보법 [시행 2021. 2. 4.]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- 제33조의2